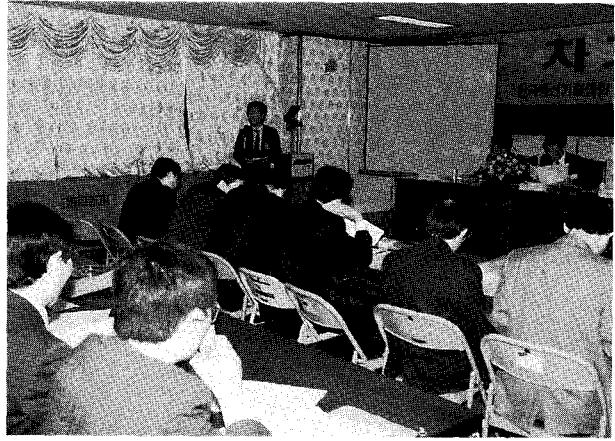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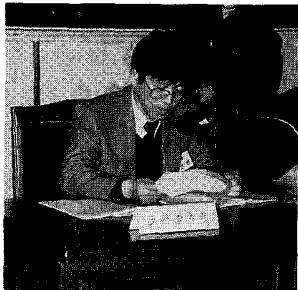


**표•준•화
활•동•소•식**



기술 총회

제2차 기술총회가 11월 15일 중앙우체국 국제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조정주 의장의 개회선언에 따라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피선된 3인의 부의장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각기 활발한 활동을 다짐한 의장단의 새로운 면모는 아래와 같다.

주요 결과에 있어 그 동안의 활동으로 표준화 작업이 완료된 3건(ISDN사용자-망간 인터페이스, 비디오텍스, 원격검침통신 절차 개정)에 대한 심의·의결에 의하여 TTA 단체 표준으로 제정하였다. 이들은 국가권고 표준으로 제안하기로 결정되었고, 이어 조정 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92년도 21건의 표준화 과제와 기술 총회 운영 세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가 있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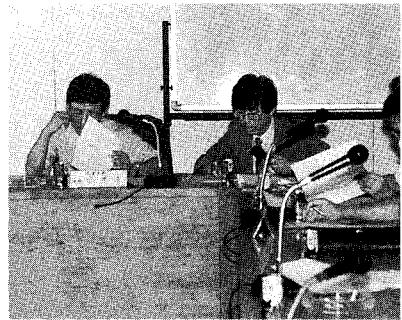
기술 총회 의장단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책
의 장	조 정 주	금성정보통신주식회사	전 무 이 사
기술 담당 부의장	이 흥 구	한국통신	국 장
기획 담당 부의장	김 영 운	한국이동통신주식회사	본 부 장
국제 담당 부의장	임 주 환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센 터 장

92년도 표준화 과제

(0-위원추천가능, x-위원추천불가)

No.	제 안 과 제 명	표준화시기	과제 제안자	비 고
1	ISDN망간 신호방식	91. 92. 1/4 92.	금성정보통신 동양전자통신 한국전자통신연구소	0 0 X
	가. 신호연결제어부	92.	한국통신	0 초안제출
	나. 확신과급응용서비스요소	82.	한국통신	0 초안제출
	다. 신용통화서비스응용서비스요소	92.	한국통신	0 초안제출
	라. 문답처리기능부	92.	한국통신	0 초안제출
	마. 메시지전달부	92.	한국통신	0 초안제출
	바. ISDN사용자부	92.	한국통신	0 초안제출
	사. ISUP : 부가서비스	92.	한국통신	0 초안제출
	아. 전화사용자부	92.	한국통신	0 초안제출
2	PSTN망간 신호방식 기준	92.	한국통신	0 초안제출
3	동기식 디지털계위 기준	92.	한국통신	0 초안제출
4	디지털 네트워크 동기기준	92.	한국통신	0 초안제출
5	디지털 다중화계위 기준	92.	한국통신	0 초안제출
6	디지털 가입자 No.1신호방식 : 망계층 회선교환호 제어절차	92.		0 초안제출
				한국통신 RC



7	전자식 전화기에 의한 문자입력 방식	92.	삼성전자	
8	FDDI-1	92. 92.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0 0 초안제출예정
9	디렉토리 시스템	92.	한국전자통신연구소	0 초안제출예정
10	FTAM 기본표준	92.	한국전자통신연구소	0
11	TOKEN-RING LAN	92.		0 초안제출예정
12	TOKEN-BUS LAN	92.	ETRI	0 초안제출예정
13	T1 PRI 표준	92.	삼성전자	0
14	ISDN 부가서비스	92. 92.	DSS1실무위 삼성전자	
15	가입자선로 코딩방식 표준화	92.	한국통신	0 초안제출
16	ISDN PBX 관련 인터페이스	92. 3/4 92.	동양전자통신 한국전자통신연구소	0 X
17	한글표시 추가기능 PAGER	92. 92. 3/4 91 - 92. 92. 93. 92.	금성정보통신 동양전자통신 무선통신SC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풍물산	0 0 0 0 X 0
18	DIGITAL CELLULAR SYSTEM	92. 92. 1/4 91 - 92. 92. 94. 92. 93.	금성정보통신 동양전자통신 무선통신SC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나이브스 정풍물산	0 0 0 0 X 0 0
19	이동가입무선전화 가입장치(개정)	92. 2/4 92. 92. 94.	동양전자통신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풍물산	0 0 X 0
20	코드없는 전화기(개정)	92. 4/4 92. 92. 92.	동양전자통신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풍물산	0 0 X 0
21	WIRELESS PABX방간, 장치간 표준	92.	삼성전자	0

1. No.1~No.12의 과제는 초안의 기제출 또는 제출 예정인 바, 92년도에 우선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토록 한다.

2. No.13~No.21의 과제는 사무국의 여력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한다.

조정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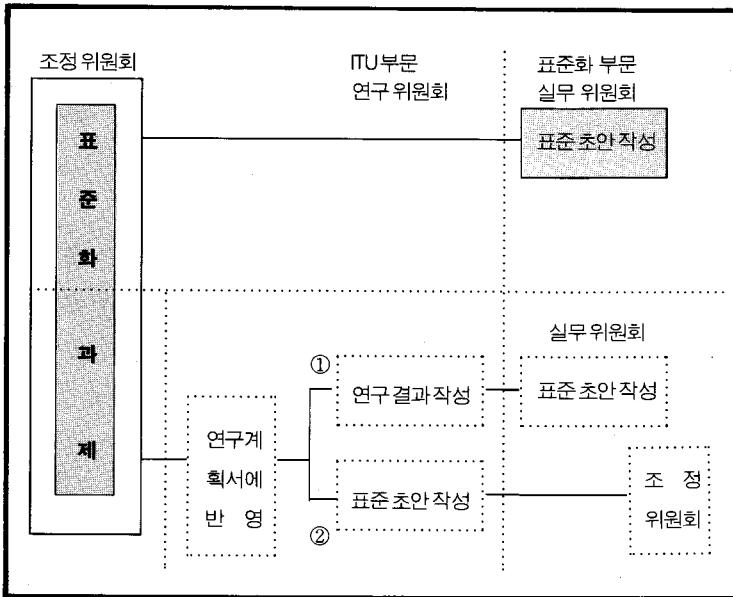
제 6차 조정 위원회가 9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열려 국제 표준의 국내 표준화 추진 방안에 대한 협의와 아울러 현재까지 추진된 표준화 부문 각 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날 협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된 내용에 있어 우선 국제 표준의 국내 표준화 추진 방안으로 첫째, 표준화 부문에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둘째로 ITU 부문과 표준화 부문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국제 표준의 국내 표준화 추진시에는 ITU 부문 연구 위원회에 홍보하여 필요에 따라 국제 표준 적용의 적합성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다.

셋째, 표준화하고자 하는 국제 권고에 대한 연구 위원회의 연구 결과는 표준 초안 작성시 반영토록 하며, 연구 위원회에서 연구 결과로 표준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는 조정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되는 절차에 따라 표준화를 추진한다 등이 있었고 이를 계통도로 나태내면 뒤의 도표와 같다.

한편, 신규 실무 위원회의 구

■ 국제 표준의 국내 표준 초안시 작성체계도



성에 있어 표준화 활동 참여 위원이 적은 표준화 과제에 대해서는 실무 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토의를 통해 최소 3개 단체 이상이 참여하는 과제는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키로 하여 위원회 구성에 따른 최소 위원수를 확정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제안하였던 ISDN 단말에 대한 과제(ISDN 전화기, 단말기 정합 장치, ISDN PCS 카드)도 과제 채택이 결정되어 즉시 표준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제 7차 조정 위원회는 11월 5일 개최되어 92년도 표준화 추진 과제와 기술 총회 운영 세칙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주요 결정 사항으로는 21건에 이르는 92년도 표준화 과제가 확정되었으며 기술 총회 운영 세칙의 개정에 있어서 「조정 위원회의 개최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효율적인 표준화 추진을 위해 산하 각 실무 위원회의 대리 출석 제도를 삭제」를 결정하였다.

기 결정된 표준화 과제의 목록은 앞에서의 제 2 차 기술 총회 기사를 참조바라며, 이하에서는 기술 총회 운영 세칙을 원문대로 게재하면서 굵은 활자로 표기된 부분이 신규 개정 또는 추가된 것임을 양지하기 바란다.

기술 총회 운영 세칙

개정 : 1991. 5. 31.

개정 : 1991. 11. 15.

제 1 장 목적

제1조(목적)

이 운영 세칙은 재단법인

한국통신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기술 총회 운영 규정(제5조)에 의거 협회가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기술 총회

제2조(조직)

① 협회는 표준화 활동 최고 의결 기관으로 기술 총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기술 총회와 사무국 간에 업무의 원활한 조정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조정 위원회를 둔다.

③ 기술 총회 밑에 표준화 활동의 전문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 분과 위원회를 둔다.

④ 각 분과 위원회 밑에 표준화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실무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술총회의 구성)

① 기술 총회에는 사업 참가자 모두가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 참가자 중 기금 출연사와 분담금 납입사는 자기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대표 위원 1명을 지명하여 참여하며, 기타 참여사는 참관자 자격으로 참여한다.

③ 특별 참가자는 본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 총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사업 참가자가 아닌 특정인 및 단체의 대표는 기술 총회 의장의 초청에 의하여 초청 위원 자격으로 기술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4조(임무)	기술 총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 승인하며, 의결은 투표로 힘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의결)	① 의결은 제4조(임무)의 의결, 승인 사항 중 12.7.8호에 관한 사항은 투표한 총투표 단위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3.4.5.6호에 관한 사항은 투표한 총투표 단위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술 총회의 의장 선출		② 의장은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표준화 활동 체계에 관한 사항 검토, 승인		③ 부의장은 협회 참가자 그룹 중 동일 그룹에서 선임되어서는 아니된다.	
3. 표준화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검토, 승인		④ 의장은 기술 총회를 충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에는 의장의 지령에 의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주요 위원회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검토 및 심의, 의결		⑤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표준의 작성 절차 및 방법의 적합성 검토, 승인		⑥ 간사는 협회 표준화 담당 부서장이 된다.	
6. 단체 표준(안)의 제정,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제10조(의결 사항 준수 및 공개)	
7. 단체 표준의 국가 표준화 제안에 관한 사항 검토, 승인		① 위원은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8. 기타 조정 위원회에서 기술 총회의 의결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한 사항		② 의결된 사항은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공개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불임(2)와 같다.	
제5조(회의 개최)		제11조(의사록)	
①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① 회의 개최시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사업 참가자 모두에게 통보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2/4분기 및 4/4분기 중에 개최한다.	② 표결을 힘에 있어서 의사 표현은 불임(1)에 의거 다음중 하나로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③ 임시 회의는 다음 경우에 개최한다.	③ 표결을 힘에 있어서 의사 표현은	2. 재적 위원과 출석 위원의 수	
1.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시	불임(1)에 의거 다음중 하나로 한다.	3. 출석 위원 성명(우편 표결자 및 위임자 포함)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시		4. 의결 사항(내용, 경과, 결과 등)	
3. 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시	② 반대의 경우는 반대 이유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타 회의 진행 사항 등	
4. 조정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시	③ 기권의 경우는 ②항의 반대 이유 또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경우 및 기일내 제출되지 않은 서면 의결서를 포함한다.		
④ 회의 소집		제3장 조정 위원회	
1.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2. 의장은 제③항 각호의 경우 회의 개최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조직)		
3. 회의 소집시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 등을 최소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2조 ②항에 의거 표준화 활동 방향 및 업무 내용의 조정과 사업 참가자와 협회 사무국간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기술 총회와 사무국간에 위치하는 의견 조정 기구로서 조정 위원회를 둔다.		
4.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시 개회한다.	제13조(조정 위원회의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인, 부의장 3인(기획 담당, 기술 담당, 국제 담당),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① 조정 위원회 구성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기술 총회 의장단	
		2. 각 분과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	

3. 필요한 경우 ITU 위원회 및 산하 분과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
②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의장단
임기로 한다.

제14조(임무)

- ① 조정 위원회는 표준화 활동의 의견 조정과 관련해서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화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 조정
 2. 표준화 대상 과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선정
 3. 중장기 표준화 계획의 검토, 조정
 4. 분과 위원회의 신설, 폐기,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각 분과 위원회 업무에 관한 의견 조정 및 분류 배정
 6. 기술 총회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
 7. 기술 총회 및 분과 위원회의 임시 회의 개최 요구
 8. 기타 주요 행사의 계획, 집행에 관한 의견 조정
 9. 기타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회의 개최)

- ①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 회의는 연 4회 개최하며 매 분기마다 개최한다.
- ③ 임시 회의는 다음 경우에 개최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시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시
 3.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시
 4. 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시
- ④ 회의 소집
 1.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2. 의장은 ③항 각호의 경우 회의 개최 요청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 임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의 소집시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 등을 최소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시 개최한다.

제16조(조정 위원회 의결)

조정위원회 의결은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권한 위임 등)

회의에 불참한 위원은 회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의장단)

- ① 조정 위원회의 의장은 기술 총회 의장이 된다.
- ② 부의장은 기술 총회 부의장 중 조정 위원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 ③ 간사는 협회 표준화 담당 부서장이 된다.
- ④ 의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불참시 의장의 의무를 대행한다.
- ⑤ 간사는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⑥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의장단 임기로 한다.

제 4 장 분과 위원회

제19(조직)

- ① 제 2조 ③항에 의거 기술 총회 밑에 전문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 분과 위원회를 둔다.
- ② 각 분과 위원회 밑에 표준화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실무, 전문 위원회를 둔다.

제20조(분과 위원회의 구성)

- ① 사업 참가 규정 제5조(사업 참가자의 참가 범위 및 권리)에 의거 사업 참가자로부터 전기통신 정보통신 및 전파통신 분야의 표준화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견 간부급으로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한다.
- ② 특별 위원은 해당 분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21조(임무)

- ① 분과 위원회는 표준화 활동의 중심체로서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화 활동 방향의 제시 및 협의
 2. 표준화 대상의 발굴 및 제안
 3. 중장기 표준화 계획의 심의
 4. 연도별 표준화 계획의 우선 순위, 세부 일정 계획 수립, 검토 및 심의
 5. 표준화 과제에 대한 표준화 지침서 작성 및 의견 수렴 방법 결정
 6. 단체 표준(안)의 확정 및 표준 번호 부여
 7. 필요한 실무, 전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 선발 및 추천
 8. 실무, 전문 위원회 활동 내용 및 결과의 검토 및 심의
 9. 조정 위원회 및 소속 실무, 전문 위원회의 임시 회의 개최 요구
 10. 표준화 동향 조사 자료와 정보의 상호 교환, 분석 및 의견 수렴
 11. 기타 해당 분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의견 제시 등
 12. 의견이 일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들을 대상으로 거수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개최)

- ①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 회의는 연 4회 개최하며 매분기마다 개최한다.

- ③ 임시 회의는 다음 경우에 개최한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시
-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시
- 3. 조정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시
- 4. 협회 표준화 담당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시
- ④ 회의 소집
 - 1.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 2. 의장은 제 ③항 각호의 경우 회의 개최

요청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 임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 요구, 지명할 수 있다.	회의 목적 등을 최소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의 소집시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 등을 최소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무 및 전문 위원회는 분과 위원회 의장단과 협의하여 협회 회장의 승인에 따라 협회 사업 참가자가 아닌 참가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4. 회의는 재적 위원 4분의 1이상 출석시 개최한다.
4.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시 개최한다.	④ 실무 위원회는 최소 3개사 이상이 참가하여야 구성할 수 있다.	제29조(권한 위임 등) 회의에 불참한 위원은 회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 위임 등) 회의에 불참한 위원은 회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임무) 실무, 전문 위원회는 표준화 활동의 실체로서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30조(의장단의 구성과 임무) ① 의장단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하며, 내부에 전문팀이 구성되었을 경우 팀장을 포함한다. ② 의장, 부의장, 간사, 팀장 등은 위원간 후선으로 선출하여 협회 회장이 위촉한다. ③ 의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불참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협회 사무국 담당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의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불참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의장단은 필요, 또는 요구가 있을시 기술총회 또는 조정 위원회에서 활동 내용 및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4조(의장단의 구성과 임무) ① 의장단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간 후선으로 선출하고 협회 회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는 협회 사무국 담당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의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불참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⑥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의장단은 필요, 또는 요구가 있을시 기술총회 또는 조정 위원회에서 활동 내용 및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 소속 분과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표준화 과제의 표준 초안의 작성 등 세부 과제 수행 2. 이에 관련되는 기술 자료 및 정보의 입수, 검토, 의견 조정 및 협의 등 3. 기타 해당 분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의견 제시 등 4. 표준 초안 작성을 위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견 일치를 도출해 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5. 의견이 일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들을 대상으로 거수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⑧ 간사는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⑨ 의장단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한다. ⑩ 의장단은 필요 또는 요구가 있을시 소속 분과 위원회에서 활동 내용 및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5장 실무, 전문 위원회	제28조(회의 개최) ①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 회의는 위임된 과제의 내용에 따라 실무, 전문 위원회 자체에서 결정한 회의 개최 계획에 따라 개최한다. ③ 임시 회의는 다음 경우에 개최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시 2.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시 3. 소속 분과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시 ④ 회의 소집 1.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2. 의장은 ③항 각호의 경우 회의 개최 요청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 임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의 소집시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제6장 표준의 작성 절차
제25조(조직) 제2조④항 및 제18조②항에 의거 분과 위원회 밑에 표준화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실무, 전문 위원회를 둔다.	⑤ TTA 단체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기 절차는 붙임(3)과 같다.	
제26조(위원의 구성) ① 사업 참가 규정 제5조(사업 참가자의 참가 범위 및 권리)에 의거 사업 참가자로부터 표준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실무 책임자급으로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한다. ② 소속 분과 위원회는 필요한 참여	제31조(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기) TTA 단체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기 절차는 붙임(3)과 같다.	
③ 실무 및 전문 위원회는 분과 위원회 의장단과 협의하여 협회 회장의 승인에 따라 협회 사업 참가자가 아닌 참가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32조(표준의 제안 및 표준화 지침 작성) ① TTA 단체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기에 대한 사항은 사업 참가자 중 분과 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단체는 그 위원의 소속 분과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분과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사업 참가자와 사업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협회 사무국에 제안한다. ② 단체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기 제안 양식은 붙임(4)과 같다.	

③ 실무 위원회 표준화 활동을 위하여 각 분과 위원회에서 작성하는 표준화 지침서 양식은 볼임(5)과 같다.
제33조(TTA 단체 표준 번호)
TTA 단체 표준의 표준 번호 부여 계획은 볼임(6)과 같다.

제 7장 기타

제34조(회의 출석 실비)
① 기술 충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협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 출석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출석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협회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유회의 경우에는 회의 출석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위원의 해임, 탈퇴 및 변경)
① 협회 회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된 위원에게 해임 사항을 문서로 통보한다.

1. 위원회의 의결, 결정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위원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3. 위원회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 ② 해임된 위원은 해임된 날로부터 2년간 위원으로 재임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 참가자는 다음의 경우 볼임(7)에 의거 위원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제34조①항 각호에 의거 위원이 해임된 경우

2. 위원이 소속 단체에서 퇴직한 경우
3. 기타 소속 단체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거 변경하여야 할 경우
④ 협회의 사업 참가자로 부터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 사유서를 협회 회장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탈퇴한다.

부 칙

1. (시행일)본 규정은 1991. 11. 15.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① 시행일 이전에 구성되어 활동 중인 위원회는 본 세칙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한다.
② 시행일 이전에 구성되어 활동중인 위원회는 볼임(8)과 같다.

국가 권고 표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정보 통신 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 중요성은 나날이 부각되고 있으며, 정보 사회에서의 활용은 인간의 신진 대사를 위한 호흡처럼 산업 각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듯 첨단을 향해 달리고 있는 대열 속에서 정보 통신의 꽃을 피우게 할 수 있을 EDI(전자식 자료 교환)는 기관 또는 기업간에 서류를 주고 받을 새로운 수단으로써, 신속·정확성은 물론이거나와 경제성이란 장점을 통해 산업 전반에 걸친 업무 효율화 및 경영 합리화에 필수적인 요소를 자리잡고, 궁극의 페이퍼리스(Paperless) 시대를 도래시켜줄 것으로 기대케 하고 있다.

그러나, VAN 분야의 핵심이라 할 EDI는 정보 통신 분야의 선진국인 구미 지역에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급속하게 각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의 실정은 아직 도입·소개되고 있는 초기 단계로 올바른 인식과 적절한 여건을 조성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정보 통신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표준화 활동을 통한 모색이 대두됨에 즈음해 EDI 국내 표준(안)이 개발되어 지난 12월 13일에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이의 국가 권고 표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전자식 자료 교환(EDI)메시지 표준(안)

■ 표준의 목적과 기대 효과

현재 국내 표준의 부재로 인하여 세계적인 EDI 보급 추세에 동조치 못해 고립될 위기에 봉착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국내 고유의 표준을 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EDI 후발 주자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 활용하여 선진국들이 EDI 표준 제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담습치 않고, 단시일 내에 최적의 EDI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국내 EDI 기술 개발의 원동력이 되어 2~3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 표준 개발자

고려대학교 EDI 연구실(김태윤 공학박사)

■ 표준의 영향권으로 예상되는 범위

국내의 통신 소프트웨어 업계 및 EDI를 사용하는 모든 업계에 폭넓은 영향이 예상된다.

■ 표준(안) 요약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란 통신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컴퓨터간에 서로 주고 받는 기업간 거래 정보 교환 시스템이다.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EDI 국제 표준은 여러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에는 UN/EDIFACT와 미국의 ANSI X12이다. 그러나 현재 EDIFACT가 세계적인 단일 표준으로 채택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EDI를 도입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국내 EDI 메시지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국내 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우선 국제 표준과의 호환성 문제이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 EDIFACT와 동일한 형태의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지만, 아직 까지 미국의 표준인 X12가 세계 시장에서 더욱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X12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EDIFACT가 세계

단일 표준으로 채택된다고 해도 그것은 미국의 X12와 통합된 상태가 될 것이다.

EDI의 가장 최고 선진국인 미국이 매우 오랜 시간 동안에 300여 가지의 메시지 표준을 개발하여 실용화하고 있으므로 EDIFACT 위원회가 X12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세계 표준 제정을 단독으로 주도할 수 없다. 따라서 EDIFACT에만 적합한 국내 표준을 제정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매우 불합리하며, EDI 국내 표준은 EDIFACT와 X12 모두에 호환성이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EDI 메시지 표준의 제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세계 표준인 EDIFACT의 규칙을 지키면서 X12의 내용을 충분하게 포함시켜 EDIFACT와 X12에 모두 호환성이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국가 표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지하기 바라며, 60종에 이르는 EDI 메시지 표준 (KEMS : Korea EDI Message Standards)(안)에 대한 개요와 EDI 표준에 관련된 개념, 그리고 표준 제정의 원칙 등을 너무도 방대한 관계로 지면에 실을 수 없음을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망간 인터페이스 분과 위원회

제 5 차 회의

일시 : 1991년 9월 26일

- 의장단 선출
- 91년도 표준화 과제에 대한 지침서 작성(6종)
- 92년도 표준화 과제 검토

망·단말간 인터페이스 분과 위원회

제 9 차 회의

일시 : 1991년 11월 1일

- 실무 위원회 확정 표준안(3건) 심의 완료, 기술 총회 상정

구내 통신 분과 위원회

제 6 차 회의

일시 : 1991년 9월 12일

- 산하 실무 위원회의 활동 현황 검토
- 92년도 추진 과제 협의

제 7 차 회의

일시 : 1991년 10월 31일

- 92년도 표준화 추진 과제 확정

무선 통신 분과 위원회

제 8 차 회의

일시 : 1991년 9월 17일

- 과제 지침서 작성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
 한글 표시 기능 페이저
- TRS(육상 이동통신)의 표준화 보류 결정

실무 위원회

■ DSS.1 실무 위원회

- 제 11 차(9월 5일)~제 15 차(11월 29일)회의
-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관련 표준화 작업
 - 표준화 추진 완료 및 의견 수렴 실시
 - 의견 수렴 결과 반영 및 기술 총회 상정, 승인 획득
 - 표준 인쇄

■ 전기 통신 품질 기준 실무 위원회

- 제 5 차(9월 18일)~제 7 차(11월 15일)회의
- Loudness Rating에 관한 표준화 검토
 - SLR, JLR 및 RLR 배분에 관한 검토
 - 관련 보고서 초안 확정
 - 이견 수렴 중

■ 비디오텍스 실무 위원회

- 제 7 차(10월 10일)~제 8 차(10월 31일)회의
- 표준(안) 확정에 따른 이견 수렴 실시
 - 이견 수렴 결과 검토 및 반영
 - 기술 총회 상정, 승인 획득
 - 표준 인쇄

■ 표준화 과제 계획 실무 위원회

1. 고도 통신팀

- 제 7 차(9월 27일)~제 9 차(11월 19일)회의
- 표준화 대상 분야 선정 및 검토
 - 담당 분야 검토 결과 보고서 작성 완료

2. 이동체 통신팀

- 제 7 차(9월 26일)~제 8 차(10월 17일)회의
- 표준화 대상 분야에 대한 표준화 시기 예측
 - 관련 분야 검토 보고서 작성 완료

3. 유선 방송팀

- 제 5 차(9월 30일)~제 7 차(11월 27일)회의
- 검토 대상 분야 선정
 - 과제별 표준화 시기의 예측 및 보고서 작성

■ 개인 통신 실무 위원회

- 제 6 차(10월 2일)~제 8 차 회의(11월 22일)
- 표준화 과제(CT-2)에 대한 표준화 유보 결정
 - 향후 CT-2에 대한 연구 및 관련 토의 실시 예정

TTA 단체 표준 공고

당 협회의 기술 총회 운영 세칙 제 10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TTA 단체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적합성/연동성 시험 방안 연구 실무 위원회

제 1차(10월 1일)

- 과제에 대한 설명 및 상호 의견 교환
- 의장단 선출

■ FAX-망간 접속 실무 위원회

제 1차(10월 8일)

- 과제에 대한 토의
- 의장단 선출

■ 산업 재산권 등의 취급 검토 실무 위원회

제 4차(10월 10일)~제 5차(11월 28일) 회의

- 과제 관련 설명 및 의장단 선출
- 「ANSI에서의 취급 방안」에 관한 토의

■ 망간 접속 실무 위원회

제 1차(10월 11일)~제 2차(11월 8일) 회의

- 표준화 과제에 대한 협의
- 의장단 선출 및 향후 활동 계획 협의

■ ISDN-PSTN간 접속 실무 위원회

제 1차(10월 15일)~제 2차(11월 7일) 회의

- 표준화 추진 관련 협의
- 의장단 선출 및 한국통신 제안(안)검토

■ 패킷망과 가입자간 접속 실무 위원회

제 1차(10월 16일)

- 과제 지침서 내용 검토
- 표준화 추진 관련 협의

■ 데이터 서비스 장치 실무 위원회

제 1차(10월 22일)~제 2차(11월 21일) 회의

- 과제 지침서 내용 검토 및 표준화 관련 토의

표준 번호	표준의 제목
TTAKO-0001	원격검침 시스템 통신절차 표준(개정)
TTAKO-0018	비디오팩스 표준
TTACT-I411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기준 구성
TTACT-I412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구조 및 엑세스능력
TTACT-I430	기본 사용자-망 인터페이스-계층 1규격
TTACT-I431	일차군 속도 사용자-망 인터페이스-계층 1규격
TTACT-0820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 데이터링크 계층-망 인터페이스
TTACT-0921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데이터링크 계층
TTACT-0930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계층 3-일반 사항
TTACT-0931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계층 3규격

각 항 공히 시행 일자는

1991년 11월 15일

■ G-4FAX 실무 위원회

제 1차(10월 25일) 회의

- 의장단 선출 및 표준화 추진 관련 협의

■ ISDN 단말 실무 위원회

제 1차(10월 29일)~제 3차(11월 26일) 회의

- 의장단 선출 및 표준화 추진 계획 수립
- ISDN PC S 카드 관련 검토

■ 전기 통신 기술 기준 실무 위원회

제 1차(10월 31일) 회의

- 기술 기준 관련한 상호 의견 교환

■ 데이터 다중화기 실무 위원회

제 1차(11월 8일)~제 2차(11월 28일) 회의

- 의장단 선출 및 과제 제안서 검토
- 표준 초안 검토

표준화 완료 실무 위원회

국내 전기 통신 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해 주었던 기술총회 산하의 9개 실무 위원회에서는 91년도 표준화 활동의 결실로 각각 TTA 단체 표준을 작성·완료하였다.

표준화 활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소속 회사의 바빴던 업무 중에도 전기 통신 표준화에 기여해 준 9개 실무 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지면을 통한 감사를 드리며, 아쉬움과 함께 그 명단을 게재한다.

■ 모범 실무 위원회

직책	성명	기관명	소속 부서 및 직책
부의장	장봉익	(주)삼보컴퓨터	통신사업본부 Network팀 선임연구원
위 원	김종부	금성정보통신(주)	연구소데이터통신팀선임연구원
위 원	주현오	금성통신(주)	연구소특수2팀선임연구원
위 원	오영택	대영전자공업(주)	개발1실 선임연구원
위 원	호요철	대우전자(주)	컴퓨터 개발부 대리
위 원	이광섭	대우통신(주)	소래기술개발부 대리
위 원	조근배	(주)데이터콤	연구소 과장
위 원	김정규	삼성전자(주)	단일시스템사업본부 시스템개발2대리
위 원	김성국	한국IBM(주)	정보/통신지원부 TCR
위 원	강승호	데이터콤	기술 본부
위 원	강석현	현대전자산업(주)	컴퓨터사업부 개발6부

■ 신용 카드 조회기 실무 위원회

직책	성명	기관명	소속 부서 및 직책
의장	강대영	맥슨전자(주)	국내 사업부 과장
부의장	조귀순	데이터콤	VAN 개발부 대리
위 원	윤동오	대영전자공업(주)	연구소 주임 연구원
위 원	고택남	(주)데이터콤	부설 연구소 과장
위 원	손진수	한국전기통신공사	서비스연구국선임연구원
위 원	한건호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분산시스템연구실연구원
위 원	박종열	한국정보통신(주)	시스템 개발 실 대리

■ 디지털 전송 방식 실무 위원회

직책	성명	기관명	소속 부서 및 직책
의장	김주봉	삼성전자(주)	전송 사업부 과장
위 원	남현철	금성정보통신(주)	전송 기술 실 사원

직책	성명	기관명	소속 부서 및 직책
위 원	한교중	대영전자공업(주)	개발1실 선임 연구원
위 원	주남영	대우통신(주)	종연교환연구실통신연구실대리
위 원	김진홍	동양전자통신(주)	중앙 연구소 사원
위 원	고영종	(주)삼보컴퓨터	기술연구소 연구4실 책임연구원
위 원	김정현	삼우통신공업(주)	기술 연구소 대리
위 원	조규백	성미전자(주)	기술 연구소 과장
위 원	변동식	데이콤	사업계획실 국제전화계획그룹연구원
위 원	박경선	한국전기통신공사	연구개발단원송기술연구실선임연구원
위 원	고제수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전송기술개발부 연구원

■ FTAM 실무 위원회

직책	성명	기관명	소속 부서 및 직책
의장	오익균	데이콤	풀질 보증 실과장
부의장	박승철	OSIA	한국IBM(주) 연구원
간사	박태연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컴퓨터통신연구실연구원
위 원	김한주	금성정보통신(주)	연구소 NG선 일 연구원
위 원	오영택	대영전자공업(주)	연구소 제1연구단선 일 연구원
위 원	안삼주	대우통신(주)	종연 컴퓨터 연구실 대리
위 원	강기무	동양전자통신(주)	중앙 연구소 연구원
위 원	정철윤	(주)삼보컴퓨터	통신사업부 연구원
위 원	유항재	삼성전자(주)	교환연구실 선임 연구원
위 원	유관희	데이콤	풀질 보증 실 대리
위 원	김병옥	한국여행정보(주)	기술부
위 원	임영숙	한국전기통신공사	연구개발 담당관리시스템/개발부 전문 연구원
위 원	최영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표준연구 1실 선임 연구원
위 원	김홍렬	현대전자산업(주)	산전연구소 연구5실 주임 연구원

■ M-HS 실무 위원회

직책	성명	기관명	소속 부서 및 직책
부의장	이남열	데이콤	부가통신사업본부 대리
간사	황은하	금성통신(주)	S / W 팀 연구원
위 원	이성진	금성전선(주)	연구소 주임 연구원
위 원	이옥기	금성정보통신(주)	NET 선임 연구원
위 원	김범철	대영전자공업(주)	개발 1부 연구원
위 원	송영섭	동양전자통신(주)	중앙 연구소 연구원
위 원	송명규	(주)디지콤	데이터통신연구부 연구원
위 원	안광표	(주)삼보컴퓨터	통신개발 3실 선임 연구원
위 원	이종무	삼성전자(주)	부가연구실 선임 연구원
위 원	신두선	삼성전자(주)	부가연구실 선임 연구원
위 원	박승철	한국IBM(주)	K P C
위 원	김병옥	한국여행정보(주)	기술부
위 원	강보열	한국전기통신공사	국제통신본부 시설운용국과장
위 원	박승민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컴퓨터통신연구실 선임 연구원
위 원	강민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표준 연구 1실 연구원
위 원	김한성	현대전자산업(주)	산전연구소 연구5실 연구원

직책	성명	기관명	소속부서 및 직책
위원	박형식	현대전자산업(주)	통신개발2부대리
위원	김인식	데이콤	데이터대리

■ X.25 실무 위원회

직책	성명	기관명	소속부서 및 직책
의장	고경세	데이콤	정보통신연구소주임연구원
부의장	신병철	OSIA	과기대교수
간사	김대원	금성정보통신(주)	연구소NG주임연구원
위원	황은하	금성통신(주)	S/W팀 연구원
위원	최종술	대영전자공업(주)	개발1부주임연구원
위원	장상규	대우통신(주)	종연)컴퓨터연구실대리
위원	정규승	동양전자통신(주)	중앙연구소 연구원
위원	최욱	(주)삼보컴퓨터	통신사업부선임연구원
위원	박성일	삼성전자(주)	컴)통신S/W개발실대리
위원	이교순	삼성전자(주)	시스템개발실 사원
위원	황명구	삼성전자(주)	부기연구실주임연구원
위원	김철	한국IBM(주)	공공기획관리본부차장
위원	강영식	한국전기통신공사	국제통신본부)시설운용국과장
위원	전호섭	한국전기통신공사	기술기획실통신망계획국과장
위원	김창래	한국전기통신공사	정보통신본부)정보통신사업국과장
위원	박태룡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업개발단사업계획국과장
위원	유상조	한국전기통신공사	연구개발단기술기준연구부부장
위원	이성준	한국전기통신공사	기술기획실통신망계획국과장
위원	안병호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표준 연구 1실 연구원
위원	정태수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통신망구조연구실선임연구원
위원	유동기	한국정보통신(주)	시스템기술부 대리
위원	오세현	현대전자산업(주)	통신개발2부 대리
위원	설홍수	삼성전자	삼성전자과장

■ DSS. 1 실무 위원회

직책	성명	기관명	소속부서 및 직책
의장	정희창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통신시스템연구단ISDN신호연구실설계연구원
부의장	김웅호	한국전기통신공사	연구개발단통신망구조연구실선임연구원
간사	김용훈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연구단표준연구3실연구원
위원	신영종	금성정보통신(주)	ISDN 그룹 주임 연구원
위원	서창규	나우정밀(주)	연구 6 실 연구원
위원	정진화	대영전자공업(주)	개발 1실 주임 연구원
위원	신영호	내우통신(주)	종연)교환연구 2실 대리
위원	강병주	동양전자통신(주)	중앙연구소 연구원
위원	박호현	삼성전자(주)	교환연구실주임연구원
위원	조경준	데이콤	기술본부 사원
위원	최병환	데이콤	기술본부
위원	최옹주	데이콤	기술본부
위원	김민숙	한국전기통신공사	연구개발단통신망구조연구실설계연구원
위원	선경섭	한국전기통신공사	연구개발단통신망전화연구실전임연구원

직책	성명	기관명	소속부서 및 직책
위원	윤동식	한국전기통신공사	연구개발단전임연구원
위원	이규식	한국전기통신공사	연구개발단전임연구원
위원	횡우선	한국전기통신공사	연구개발단통신망구조연구실전임연구원
위원	김명식	한국전자통신연구소	ISDN 신호 연구실 연구원
위원	김정하	한국전자통신연구소	TDX 개발단 ISDN S/W 연구원
위원	남운석	한국전자통신연구소	ISDN 신호 연구실 연구원
위원	조정호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통신시스템연구단ISDN신호연구실 연구원

■ 비디오텍스 실무 위원회

직책	성명	기관명	소속부서 및 직책
의장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통신연구단표준연구3실연구원
간사	차광호	데이콤	부기통신기술개발부사원
위원	강병곤	금성정보통신(주)	이동체기술사원
위원	이창기	나우정밀(주)	연구 6 실 연구원
위원	강기무	동양전자통신(주)	중앙연구소 연구원
위원	안광표	(주)삼보컴퓨터	통신개발3실선임연구원
위원	박관	삼성전자(주)	기전종합연구소선임연구원
위원	김창수	한국전기통신공사	정보통신사업부본부연구원
위원	김형욱	한국전기통신공사	연구개발단 연구원
위원	최병수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통신시스템연구단통신망설계연구원
위원	인호진	현대전자산업(주)	컴퓨터사업부개발3부주임연구원
위원	장승관	현대전자산업(주)	산전연구소연구1실선임연구원

■ 원격 검침 통신 절차 실무 위원회

직책	성명	기관명	소속부서 및 직책
의장	최광현	금성계전(주)	제3연구실과장
부의장	이병조	대한전선(주)	기술연구소제5연구부과장
간사	한윤택	(주)일진	기술연구소선임연구원
위원	김병호	금호전기(주)	계전사업부개발과 과장
위원	선흥기	금호전기(주)	계전사업부개발과 대리
위원	송수일	금호전기(주)	계전사업부 기술과 과장
위원	우문균	삼성전자(주)	통신연구소부기연구실선임연구원
위원	이희관	(주)일진	기술연구소선임연구원
위원	신대범	(주)태원	연구소 차장
위원	박수철	풍성전기(주)	기술부 개발 2 과장
위원	조영관	한국전기통신공사	연구개발부기통신연구실전임연구원

TTA 표준 총람

양재동에서 89년 3월 현판을 올리고 본격 표준화 활동에 돌입한 이래로, 지난해에는 13건의 표준을 의결하여 활발한 표준화를 위한 초석을 다

졌으며 올해 펼쳐온 노력으로 결실을 맺어 27건의 TTA 표준을 작성·의결하였다.

이로서 당 협회는 12월말 현재를 총 40건의 TTA 표준을 보유하게 되었기에 이하 총람을 게재한다.

TTAKO-xxxx

1991년 12월 현재

No	표준번호	표 준 명	제정일자	개정일자	비고
1	TTAKO-0001	원격지점검침 시스템 통신절차 표준 원격검침 시스템 통신절차 표준	89.6.8	91.11.15	
2	TTAKO-0002	퍼스널컴퓨터 통신절차 표준	89.12.6		
3	TTAKO-0003	코드없는 전화기 표준	90.6.8		
4	TTAKO-0004	키플 표준	90.6.8		
5	TTAKO-0005	구내 교환기 표준	90.6.8		
6	TTAKO-0006	장거리전화 발신제어장치 표준	90.6.8		
7	TTAKO-0007	이동기밀무선전화 가입자장치 표준	90.6.8		
8	TTAKO-0008	일반전화기 표준	90.6.8		
9	TTAKO-0009	인쇄전신시 표준	90.6.8		
10	TTAKO-0010	팩시밀리 표준	90.6.8		
11	TTAKO-0011	텔레ックス 표준	90.6.8		
12	TTAKO-0012	국선접속용 인터폰장치 표준	90.6.8		
13	TTAKO-0013	기밀자보호기 표준	90.6.8		
14	TTAKO-0014	M-H 기능표준(10)	91.4.26		
15	TTAKO-0015	모델 표준	91.5.31		
16	TTAKO-0016	신용카드조회기 표준	91.5.31		
17	TTAKO-0017	240kbps 신호규격	91.5.31		
18	TTAKO-0018	비디오팩스 표준	91.11.15		

TTACT-xxxx

No	표준번호	표 준 명	제정일자	개정일자	비고
1	TTACT-X400	M-H 기본표준, 시스템 모형 -서비스 요소	91.4.26		
2	TTACT-X401	M-H 기본표준, 기본서비스 요소 및 사용자 선택적 기능	91.4.26		
3	TTACT-X408	M-H 기본표준, 부호화된 정 보형태 변환규칙	91.4.26		
4	TTACT-X409	M-H 기본표준, 표현전달 구 분 및 표기	91.4.26		
5	TTACT-X410	M-H 기본표준, 원격동작 및 신뢰성있는 전달 서비스	91.4.26		

No	표준번호	표 준 명	제정일자	개정일자	비고
6	TTACT-X411	M-H 기본표준, 메시지 전송 계층	91.4.26		
7	TTACT-X420	M-H 기본표준, 메시지 사용 자 처리기 계층	91.4.26		
8	TTACT-X430	M-H 기본표준, 텔리팩스 단 말기 위한 접근 규약	91.4.26		
9	TTACT-X21	공중폐킷교환망접속 기본표 준, 공중데이터망에서 동작 하는 데이터 단말장치(DTE) 와 데이터회선 종단장치(DCE) 간의 접속	91.4.26		
10	TTACT-X21 bs	공중폐킷교환망접속 기본표 준, 동기식 V-계열 모델파의 접속용으로 설계된 데이터 단말장치(DTE)의 공중데이 터망에서의 사용	91.4.26		
11	TTACT-X25	공중폐킷교환망접속 기본표 준, 전용선에 의해 공중데이 터망에 연결되고 폐킷형으로 동작하는 단말장치에 대한 데이터단말장치(DET)와 데 ータ회선 종단장치(DCE)간 의 접속부	91.4.26		
12	TTACT-I411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 -기준구성	91.11.15		
13	TTACT-I412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 -구조 및 액세스 능력	91.11.15		
14	TTACT-I430	기본 사용자-망 인터페이스 -계층1규격	91.11.15		
15	TTACT-I431	일차군 속도 사용자-망 인터 페이스- 계층 1규격	91.11.15		
16	TTACT-Q20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 -데이터링크 계층- 일반사항	91.11.15		
17	TTACT-Q21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 -데이터링크 계층	91.11.15		
18	TTACT-Q30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 -계층3- 일반사항	91.11.15		
19	TTACT-Q31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 -계층 3규격	91.11.15		

TTAJS-xxxx

No	표준번호	표 준 명	제정일자	개정일자	비고
1	TTAJS-8571	화일전송, 접근 및 관리 기본표준	91.4.26		
2	TTAJS-10007	화일전송, 접근 및 관리 기능표준	91.4.26		
3	TTAJS-10009	공중폐킷교환망 접속 기능표준	91.4.26		